

영토해양 공유의 법경제학적 이해

김재한 한림대학교 교수

1. 시작하는 말

동물 세계의 공격성은 동맹 존재의 상황뿐 아니라 영역(territory) 수호의 상황에서 더 강하게 발현된다. 인간 세계에서도 영토(territory)를 둘러싼 갈등이 빈발해 왔다. 영유권 분쟁은 특정 국가가 특정 땅이나 특정 바다를 자신만의 것으로 차지하려 할 때 발생한다. 만일 특정 국가의 영유 대신에 관련 국가들의 공동 영유로 정하면 분쟁은 해소될까? 국가 간 분쟁 일부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갈등이 증대될 수도 있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처럼,¹ 오히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공유는 영토·영해 분쟁의 해소 방안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갈등의 유발 요인일 수도 있다.

공유는 여러 재화적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공유하기 쉬운 땅·바다가 있고 반대로 공유하기 어려운 땅·바다도 존재한다. 영토·영해의 갈등적 측면

* 논문 투고일: 2021. 5. 11. 심사 완료일: 2021. 5. 18. 게재 확정일: 2021. 5. 30.

1 Garrett Hardin,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pp. 1243~1248.

면은 그 재화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영토 및 영해의 운용 방향 역시 재화적 속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영토·영해를 재화적 속성에 따라 다시 해석하고, 그 재화적 속성에 따라 분쟁이 어떻게 발현되고 완화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현존하는 공유 영토·해양의 사례로 확인하는 것이다.

공유 영토·해양에 대한 선행 문헌 대부분은 특정 사례 하나에 관한 국제법적 정리이다. 여러 공유 영토·해양 사례로 논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² 영토·영해 문제에서 독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영토 공유에 대한 논의가 자칫 일본과의 독도 공유로 비약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공유 영토·해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공유 영토·해양 문제는 국제법뿐 아니라 경제학 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함의를 갖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사례의 정리에 그치지 않고 또 공유 영토·해양의 국제법적 개념과 경제학적 개념을 접목하는 융복합적 접근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토·영해의 재화적 속성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설명한다. 다음, 공유 영토, 즉 콘도미니엄(condominium)을 소개하고 그들의 재화적 속성에 따라 갈등 발생 여부 및 공유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영토·해양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2 Joel Samuels, 2008, "Condominium Arrangements in International Practice: Reviving an Abandoned Concept of Boundary Dispute Resolutio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No. 4, pp. 727~776; Taylor Calvin Perkins, 2014, "Edification from the Andorran Model: A Brief Exploration into the Condominium Solu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to Current Land Dispute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21, No. 2, pp. 643~665; Christopher Rossi, 2017, "A Case Ill Suited for Judgment: Constructing 'A Sovereign Access to the Sea' in the Atacama Desert,"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Vol. 48, No. 2, pp. 28~86.

II. 영토·해양의 재화적 속성

재화는 각기 두 가지 종류를 갖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배제성이다. 특정인만 소비하게 한다면 지 또는 특정인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면, 그 재화는 배제적(excludable)이라고 말한다. 다른 기준은 경합성이다. 내가 소비할 때 다른 누군가는 그 정도만큼 소비할 수 없다면 그 재화는 경합적(rival)이라고 부른다. 배제적이냐 아니면 비(非)배제적이냐는 기준 그리고 경합적이냐 아니면 비(非)경합적이냐는 기준에 따라 2×2의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배제적이고 경합적인 재화는 사유재(private goods)로, 반대로 배제적이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은 재화는 공공재(public goods)로 불린다. 배제적이면서 비경합적인(nonrival) 재화는 클럽재(club goods)인데, 지식재산권이 클럽재의 대표적 예이다. 끝으로, 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인(non-excludable) 재화는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인데, 공공 낚시터가 그 예이다. 사실, 교과서적 2×2 재화 구분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완벽한 비경합적 재화나 완벽한 비배제적 재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일 뿐이다.

1. 배제성

재화 구분의 교과서적 예시를 영토·영해에 적용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단위, 권역, 범위 등이 일관적이지 못하면 잘못된 분석과 결론이 나오게 된다.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공공재의 예로 국방과 안보를 들고 있다. 특정 국가의 국방은 해당 국민에게 공공재이지만, 그 특정 국가의 국방을 향유할 수 없는 타국 국민에게는 공공재가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특정 국가의 국방은 매우 배제적인 재화인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북한 정권 내 사람들에게는 공공재일 수 있겠지만, 남한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공공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안보 역시 특정 집단에게는 공공재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 속성에 충실한 지구촌 안보는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라기보다 생태안보(ecological security)이다.³ 지구촌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비배제적 공공재로만 모색할 수 있다.

흔히, 공유는 비배제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결합적 재화를 공유하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너도나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유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그 공유지는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중세까지 공유 영토와 무주(無主) 영토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1643~1645년 토르스텐손(Torstenson) 전쟁의 평화협정인 브뤼세브로(Brömseback) 조약은 덴마크-노르웨이와 스웨덴 간 국경에 위치한 브뤼세브로강의 섬에서 체결되었는데, 이 섬은 덴마크-노르웨이와 스웨덴 둘 다에 속하지 않는 무주지로 간주되기도 했고 또 둘 다에 속하는 공유 영토로 간주되기도 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공유와 비배제는 다르다. 모두가 공유하는 영토는 비배제적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일부만이 공유하는 영토는 그 외 국가의 영유를 배제하는 것이다. 완전한 비배제성은 일부에게만 공유되는 영토보다 오히려 아무도 영유하지 않는 무주지에서 잘 관찰된다. 일부 국가들의 공유 영토보다 무주지가 모두의 공유 영토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주권국가 등장 이후 당사국들이 특정 영토를 무주지로 합의한 사례는 없다. 일반적인 추세는 역으로 무주지에서 공유지 또는 특정국 영유로 바뀌는 것이다.

19세기까지 스발바르(Svalbard; 스피츠베르겐 Spitsbergen)는 무주지였다. 1900년대에 들어서 산업화와 정주(定住)가 이뤄지고 광산권 및 노사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주민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등장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여 전쟁 종식 때까지 관할권 논의에 진전이 없었

3 Chae-Han Kim and Bruce Bueno de Mesquita, 2015, "Ecological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Pea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pp. 539~557.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정주하고 있으나 영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1913~1920년 기간의 스발바르를 콘도미니엄의 사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물론 무주지는 공유 영토와 다르다는 점에서 스발바르를 공유 영토 사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1920년 스발바르조약은 노르웨이의 제한적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비록 배제성은 약하지만 이전과 달리 노르웨이 영유권이 인정되면서 스발바르의 공동 이용은 해체되는 수순을 겪었다. 대신에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스발바르에 대해 공유적 속성의 관여를 유지하고 있다. 거주민이 없거나 무주지였던 곳을 누군가가 영유하려면 지구촌적 가치와도 부합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 경제특구, 영주권 등 스발바르의 여러 제도는 글로벌 공공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유 영토와 유사한 개념 하나는 공동군주국(co-principality)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도라(Andorra)이다. 안도라 지역은 13세기 우르헬(Urgell) 주교와 푸아(Foix) 백작 가문 간의 무력 충돌 후 쌍방이 주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곳이다. 푸아 가문의 재산권이 나바라 왕국과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우르헬 주교가 안도라의 공동 국가원수가 되었다.

안도라는 종종 공유 영토의 예로 분류되어 매우 효과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극찬되기도 한다.⁴ 하지만 안도라 자체가 하나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공유 영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비록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우르헬 주교가 국가원수직을 공동으로 맡고 있지만, 안도라는 프랑스나 스페인의 부속 영토가 아닌, 독립된 정치체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유 영토로 보지 않는다. 1993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안도라를 주권국가로 승인하였고 안도라는 유엔에도 가입하였다. 즉 공동군주국은 공유 영토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라는 점에서 무주지는 말할 것 없고 공유 영토보다도 더 배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유 영토와 비교되는 또 다른 개념은 공동관리국(co-imperium)이다. 그

4 Perkins, 2014, pp. 643~665.

의미는 문헌마다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의는 분명한 국제적 지위를 갖고 있되 2개 이상 국가의 관리를 받는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⁵ 공동관리국의 예로는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병합되기 직전인 점령 상태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4개 전승 연합국이 관리하던 독일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위임통치(League of Nations mandates), 신탁통치(UN trusteeship), 비자치지역(UN list of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보호국(protectorate) 등이 공유 영토와 구분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한다.

2. 경합성

영토·영해 논의에서는 배제성 문제뿐 아니라 경합성 문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⁶ 공공재와 공유재는 비배제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하나는 비경합적이고 다른 하나는 경합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공공재적 속성과 공유재적 속성을 혼동하여 잘못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공공재와 공유재를 구분하여 다루어도 그 예시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여러 교과서에서는 공공 낚시터와 바다를 각각 공유재와 공공재의 예로 설명한다. 낚시할 수 있는 전체 물고기 수가 한정되어 있는 내수면(內水面) 공공 낚시터는 누가 낚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누군가는 낚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합적이고 따라서 공유재이다.

내수면뿐 아니라, 바다도 경합적일 수 있다. 이는 육지에 가까운 얇은 바다인 연해(沿海)에서 목도되기도 한다.⁷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

5 Oxford Reference,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095622651>.

6 비경합적 영토의 예로 문화예술적 영토 개념을 들 수 있다. 장운정·이호진·김재한, 2014, 「장소특정적 미술과 독도의 문화예술적 영토」, 『영토해양연구』, Vol. 7, 180~205쪽.

7 현행 선박안전법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9호)에 따르면, 항해구역은 ① 평수(平水)구역 18개구, ② 연해구역 5개, ③ 동경 175도, 동경 94도, 남위 11도,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근해구역, ④ 원양구역 등 47지

면서 연해의 공유 어장은 지구별 수협이나 마을별 하위조직인 어촌계(漁村契)에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어촌계와 새로이 어촌에 정착하려는 귀어인(歸漁人)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귀어인들은 바다의 주인이 아닌 어촌계가 횡포를 부린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 반면에, 어촌계 어민들은 자신들이 돈과 노동을 들여 가꾸어온 마을 어장에 외지인들이 와서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어촌계와 그렇지 않은 어촌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대체로, 연해 어장을 경합재로 인식하는 어민들은 외지인의 유입에 배타적이다. 어촌계에서 이미 자본과 노동을 들여 잘 관리한 어촌은 외지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지인의 어촌계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마을 내 마땅한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추가 어민 유입은 기존 주민 생계에 지장을 주는 어촌 역시 외지인의 어촌계 진입에 부정적이다. 수산자원이 제한적이라 어민이 늘면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해 어장을 비경합재로 인식하는 어민들은 외지인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한다. 어민의 노령화로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야 할 어촌은 외지인 유입을 반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남해 어촌이 어촌계 가입조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개방적인 관리로 어촌공동체의 수입을 크게 증대시켜 굶직한 포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하였다.⁸ 결국 외지인 유입이 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곳은 배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지인 유입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개방이 권고되는 것이다.

근해(近海)나 원양(遠洋) 등 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도 경합적 속성은 일부 여전히 유지된다. 그래서 넓은 해양에서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배제적이고 경합적인 사유재 속성의 해양, 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클럽재

종류로 나뉜다.

8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nfeel/222115210321>.

속성의 해양,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인 공유재 속성의 해양,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 속성의 해양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분쟁이 배제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고 경합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다. 영토·해양의 분쟁 해결 방안도 그 영토·해양이 어떤 재화적 속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 영토·영해 속성의 시대적 변천

영토와 영해의 시대적 특성도 주로 영토·영해의 재화적 속성 변천에 따른 것이다. 근대국가 등장 이전의 영토 분쟁은 근대 또는 그 이후보다 덜 복잡했다. 국제법이나 역사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군사력, 경제력, 종교문화의 힘에 의해 영유권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영토가 힘에 의해 영유권이 쉽게 바뀌었지만, 관할권 또는 영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다. 이러한 변방은 공공재적 속성을 지녔다. 누가 배타적으로 소유하지도 않았고 서로 경합적으로 소비하던 땅이 아니었다. 이른바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다. 해양은 그런 속성이 훨씬 강한 곳이었다. 특정 해양을 점유하거나 관리하기 쉽지 않았고, 설사 점유·관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굳이 자신의 영해 영유권을 공고화하려 하지 않았다.

근대에 들어 기존 변방들은 중앙정부의 관할권 확대로 특정 국가의 배타적 영토가 되었다. 접경지역이 더 이상 무(無)관할권 지역에 가까운 변방(邊方; periphery)이 아니라, 관할권 충돌의 경계(境界; demarcation)가 되었다.⁹ 즉,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비배제적(공공재적 또는 공유재적) 속성 대신에 배제적(사유재적 또는 클럽재적) 속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영토 분쟁을 개시한 비율은 민주정권보다 독재정권에서 더 높아졌다.¹⁰ 왜냐하면 국내의 다수

9 김재한, 2009, 「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사례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제3호, 305~328쪽.

10 Bruce Bueno de Mesquita, Alastair Smith, Randolph Siverson, and James Morrow, 2003,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MIT Press; James Morrow, "Territorial Change and Selection Institution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1, No. 1, pp. 11~32.

를 만족시켜야 그 정권이 유지되는 민주정권과 달리, 독재정권에서는 소수만 만족시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산 비용이 큰 공공재 대신에 작은 생산 비용의 사유재가 소수를 만족시키기에 훨씬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영토와 달리, 해양은 근대에도 여전히 비배제적 속성을 지녀 공공재 또는 공유재에 가까운 존재였다. 근대에 들어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 드물게 되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영토·영해 표현 대신에 영토·해양이라는 표현이 더 사용되어 왔을 것이다. 물론 20세기 후반 들어 기술 발전과 인구 증대로 해양에도 배제성과 경합성이 증대되어 공공재적 속성이 감소하고 대신에 사유재적 속성이 증대되었다. 해양뿐 아니라 영공, 우주 공간, 사이버 공간 등에서도 배제적 속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탈(脫)근대적 변화도 존속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처럼 국경이 열리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영국이 EU 분담금과 자국 유입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EU에서 탈퇴하는, 즉 브렉시트(Brexit)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민자와 재정의 문제는 곧 경합성 문제이다. 경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탈근대적 변화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II. 공유 영토·해양

1. 제국과 공유 영토·해양

근대주권 체제 이전에 국가 간 영토 공유는 그렇게 드문 현상이 아니었다. 고대 로마제국에서 공동 황제가 여러 차례 있었듯이 통치권 또는 관할권은 공동으로 시행되기도 했고, 영토 역시 공동으로 관리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관할권이 확립되지 못했던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 내에는 공유 영토가 자주 있었다. 황제와 공국 간의 공유 영토가 있었고 또 공동 상

속을 받은 공국들 간의 공유 영토도 있었다. 공유 영토를 둘러싼 분쟁은 베츨라(Wetzlar)의 제국 법원에 제소되거나 황제에게 청원되었다.

관할권이 분명하게 설정된 제국에서도 같은 제국 내의 공국 간의 공유 영토는 흔한 편이었다. 1779년부터 1918년까지 존속한 피우메 도시구역(City of Fiume and its Districts)은 합스부르크 제국 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피우메 공유 영토의 시작은 오스트리아 대공 마리아 테레지아에 의해서였고, 영토 공유의 종식 역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에 의해서였다. 피우메 도시구역은 크로아티아와 헝가리 간의 1868년 협정에 의해 분리도시(Corpus Separatum, 1870~1918)로 인정되었다.

분리도시로 불리는 다른 사례는 예루살렘이다. 1947년 유엔 총회는 예루살렘을 국제적으로 관리하자는 안을 채택했는데, 제국이 수행하던 역할을 유엔이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채택안은 실천되지 못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영토 공유의 다른 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유 영토(Condominium of Bosnia and Herzegovina)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878년에 점령되고 1908년 오스트리아-헝가리에 합병되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공통 통치를 받다가 1918년 슬로벤인-크로아트인-세르브인 국가(State of Slovenes, Croats and Serbs)가 수립되면서 영토 공유가 소멸되었다.

제국 간에도 영토 공유가 있었다. 688년 비잔티움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2세(Justinian II)와 우마이야(Umayyad) 칼리프 아브드 알말리크 이븐 마르완(Abd al-Malik ibn Marwan)은 키프로스(Cyprus) 섬에서 징수한 모든 조세를 반분(半分)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쌍방이 대륙에서 서로에게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를 포함해 약 300년 동안 준수되었다. 중세 키프로스는 최초의 공유 영토로 언급되기도 한다.

근대주권국가의 영토는 기본적으로 배제적이다. 공유 영토는 근대주권 국가 체제에 이질적이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근대 국제법적 기준의 공유 영토·해양은 콘도미니엄으로 불린다. 공유 영토·해양은 당사국들의 합의

에 따라 설정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쟁을 끝내면서 합의된 공유 영토·해양 그리고 전쟁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합의된 공유 영토·해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존하는 콘도미니엄들을 그렇게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 전쟁 종식과 공유 영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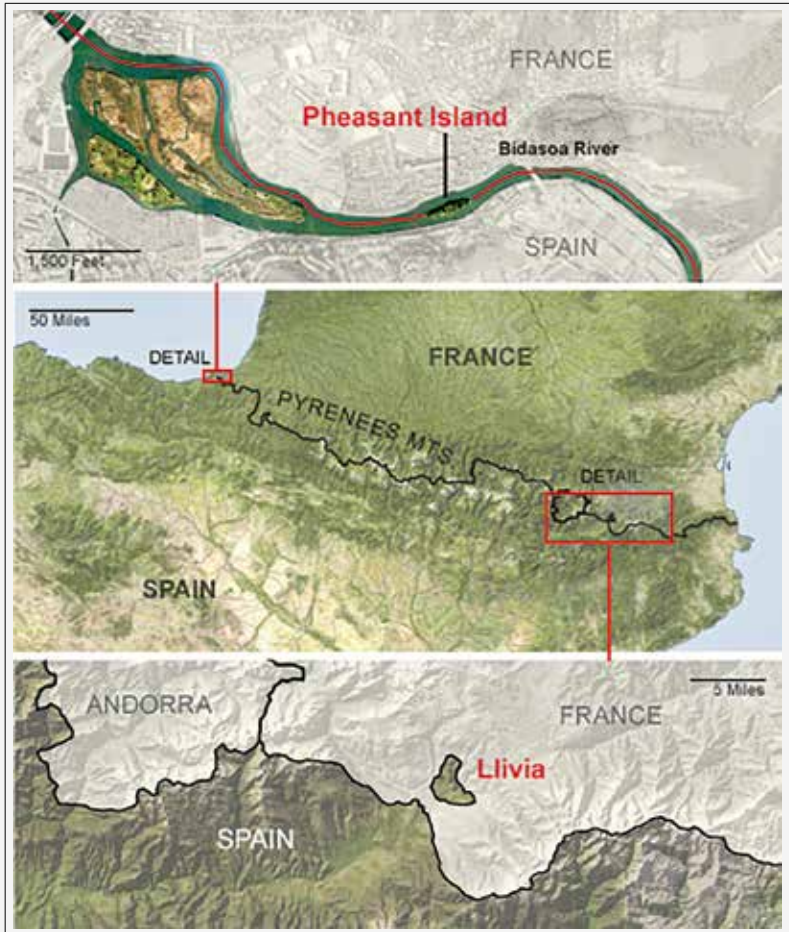
1) 핑섬

1659년 11월 7일, 스페인과 프랑스 간 국경인 비다소아(Bidasoa)강 한가운데 위치한 핑섬(Pheasant Island; 프랑스어 Île des Faisans; 스페인어 Isla de los Faisanes; 바스크어 Konpantzia)에서 프랑스 루이 14세와 스페인의 펠리페 4세는 30년 가까이 치러진 양국 간 전쟁을 종결짓는 피레네(Pyrenees)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공유적 성격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루이 14세가 펠리페 4세의 딸 마리아 테레사와 혼인한다는 내용도 이에 해당하지만, 좀 더 공유적인 성격의 합의는 조약 체결의 장소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길이가 약 200미터, 폭 40미터의 작은 섬 핑섬을 두고, 양국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반(半)년마다 바꾸는 공동 주권에 합의하였다. 1659년 11월 프랑스가 먼저 약 3개월 동안 주도적으로 핑섬을 관리했고, 166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스페인이 주권을 행사하였으며, 8월 1일부터 1661년 1월 31일까지 다시 프랑스가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36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사실 핑섬은 양국이 주권을 동시에 공동으로 행사하는 영토가 아니다. 순차적으로 주권을 번갈아가며 행사하기 때문에 핑섬은 엄격한 의미의 공동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존하는 국제법적 콘도미니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핑섬은 프랑스 영토 내의 스페인 영토인 이비아(Uliva) 그리고 공동군주국 안도라와 함께 이례적인 국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1〉 꿩섬 콘도미니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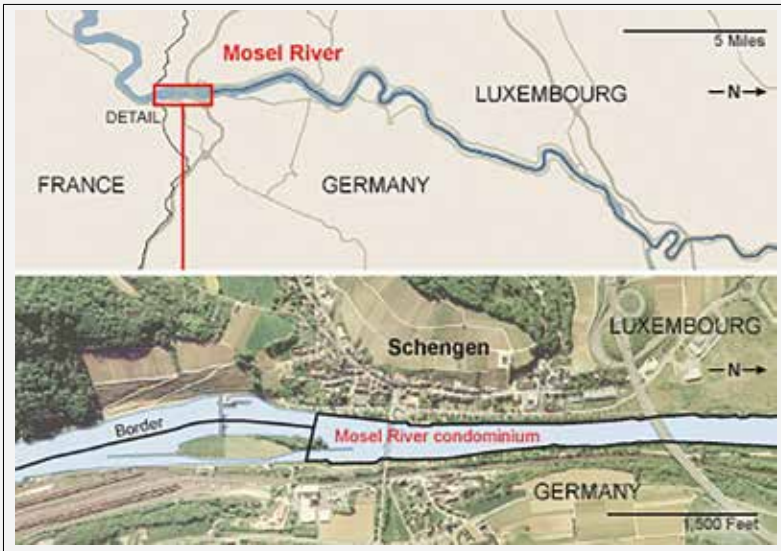
출처: Frank Jacobs, 2012, "The World's Most Exclusive Condominium," *New York Times*, January 23.

현재 프랑스-스페인 사이의 꿩섬은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 편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비다소아강 유수량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꿩섬 토양이 점차 유실되어 섬이 작아지고 있는데, 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바스크 독립 세력 등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도 있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간혹 때 스페인 영토 쪽에서 배 없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특별한 날

이 아니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영토보다 훨씬 더 배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¹¹ 썰목도 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360년 이상 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일 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거나 고가의 천연자원이 발견되었다더라면 분쟁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갈등 없이 당사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영토가 고갈되지 않는 비경합적이어야 한다.

2) 모젤강

모젤(프랑스어 Moselle; 독일어 Mosel; 룩셈부르크어 Musel)강은 유럽연합 발전에 상징적인 콘도미니엄이다. 나폴레옹 전쟁을 종식하는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프로이센과 네덜란드 간의 합의로 결정되었다. 오늘날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3개국에 접하는 모젤강 지점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독일, 룩



〈그림 2〉 모젤강 콘도미니엄

출처: Frank Jacobs, 2012, "The World's Most Exclusive Condominium," *New York Times*, January 23.

11 Frank Jacobs, 2012, "The World's Most Exclusive Condominium," *New York Times*, January 23.

셈부르크, 벨기에의 3개국에 접하는 모젤강 지점까지의 모젤강, 2개의 지류, 십수 개의 섬 등은 독일과 룩셈부르크 간의 콘도미니엄이 되었다. 모젤강 콘도미니엄 상의 교량도 “땅을 가진 자가 위아래의 길도 갖는다”(Cuius est solum, eius est usque ad coelum et ad inferos; whoever’s is the soil, it is theirs all the way to Heaven and all the way to Hell)는 당시 재산법 원칙에 따라 공동 영유가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간의 모젤강 국경은 선인 반면에, 독일과 룩셈부르크 간의 모젤강 국경은 면(面)이다. 이처럼 공유 영토·해양은 국경선이 아닌, 국경면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1884년 독일 법원은 모젤강 교량에서의 국경선이 교량 중간 지점이라고 결정하였다. 1930년대 나치 독일은 모젤강 콘도미니엄을 아예 폐기하려고 했다. 이때 룩셈부르크는 1815년 비엔나 조약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폐기에 반대하였다. 1984년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교량도 콘도미니엄에 포함한 국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1985년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국경이 만나는 쉥겐(Schengen)의 모젤강에 정박한 선박에서 3개국, 네덜란드, 벨기에의 대표들이 모여 국경 검문 폐지와 여행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동유럽 공산정권들의 붕괴로 실천이 지연되다가 1995년부터 확대되었다. 물론 쉥겐조약은 국경선에 변화를 준 합의가 아니다. 국경 관리에 대한 합의일 뿐이다.

3) 한강하구

국제법 문헌에서 콘도미니엄 사례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반도에도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하여 말도에 이르는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 수역에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림 3> 정전협정에서의 한강하구

출처: 국방부, https://www.mnd.go.kr/user/agreement/attach/agreement_attach_020100_01.pdf

정전협정 제5항은 남북이 각각 남측 강안과 북측 강안을 통제할 뿐, 쌍방의 비무장 민간 선박은 한강하구에서 항행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측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육지에 정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10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남북의 통제 지역과 한강하구 수역 간의 경계선을 밀물 때 강과 물이 만나는 선으로 하고, 상대의 통제 수역 및 강안뿐 아니라 상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정을 비준하였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한강하구는 법리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한강하구 수역의 출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4) 브르치코행정구

브르치코(Brčko) 지역은 보스니아전쟁의 1995년 평화협정(Dayton Peace Accords; 데이턴협정)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은 유일한 조항이었다. 1999년 중재 협정에 의해서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



〈그림 4〉 브르치코행정구

출처: 위키미디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2/Brcko02.svg/375px-Brcko02.svg.png>

govina)와 스릅스카(Republika Srpska) 간의 콘도미니엄으로 타결되었다. 브르치코행정구(district)는 실제로 자치행정구로 기능하고 있다.

5) 아비에이

아비에이(Abyei) 지역은 제2차 수단 내전의 평화협정에 의해 행정적 특별 지위가 부여되었었는데 2011년 남수단의 독립으로 남수단과 수단 간의 공유 영토가 되었다. 201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90호 결의안에 의해 창설된 UNISFA(United Nations Interim Security Force for Abyei)가 아비에이 지역의 비무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5〉 아비예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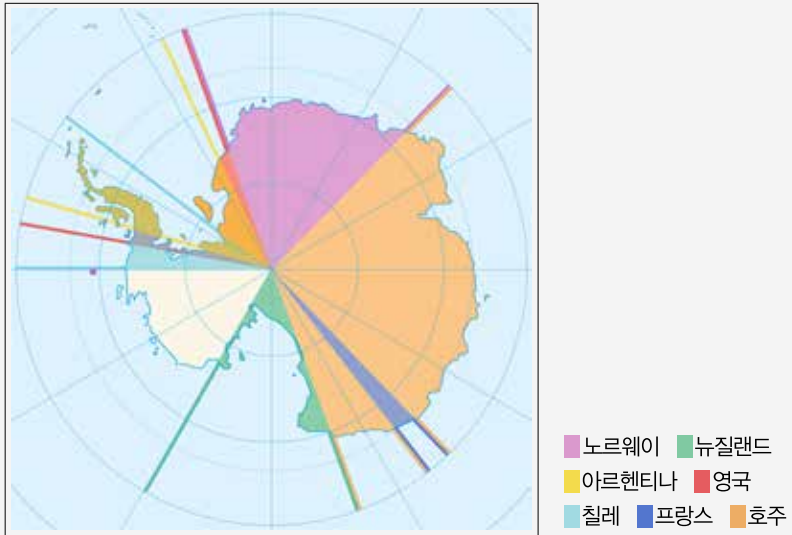
출처: 위키미디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b/Map_of_Abyei_Area_en.png/1200px-Map_of_Abyei_Area_en.png

3. 국가 간 합의와 공유 영토·해양

1) 남극대륙

1840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1908년~), 뉴질랜드(1923년~), 노르웨이(1931년~), 호주(1933년~), 독일(1939~1945년), 칠레(1940년~), 아르헨티나(1943년~) 등이 남극대륙(Antarctica)에서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6〉은 나치 정권 독일을 제외한 7개국 정부가 주장한 남극대륙 영유권 지역을 색깔로 표기한 것이다.

1948년 이들 7개국과 미국이 소련의 남극대륙 영유권 주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남극대륙 콘도미니엄 협상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1950년 소련이 남극대륙 영유권 주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천명함에 따라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일찍이 남극대륙 영유권을 주장한 7개국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벨기에, 소련, 일본이 추가된 12개 국가는 군사 활동을



〈그림 6〉 남극대륙의 영유권 주장
출처: 위키미디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4/Antarctica%2C_territorial_claims.svg/800px-Antarctica%2C_territorial_claims.svg.png

금지하는 대신에 과학조사를 허용하는 남극대륙 조약을 1959년에 체결하였다. 남극대륙 조약 당사국은 현재 54개국이며, 남극대륙은 조약상 자문(consulting) 지위를 갖는 29개 회원국의 사실상의 공유 영토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남극대륙을 국제공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2) 폰세카만

폰세카만(Gulf of Fonseca)은 오래전부터 콘도미니엄으로 받아들여졌다. 1917년 중미사법재판소(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 CAJ)는 폰세카만 연해에서의 콘도미니엄 설정을 인정했다.¹²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국경선에 서로 합의하지 못해 1969년부터 전쟁을 겪다가

12 Christopher Rossi, 2018, "The Gulf of Fonseca and International Law: Condominium or Imperial Anticolonialism?," *Jus Gentium: Journal of International Legal History*, Vol. 3, No. 1, pp. 115~153.



〈그림 7〉 폰세카만

출처: V. H. Rivera-Monroy, R. R. Twilley, and E. Castañeda, 2002, "Hurricane Mitch: Integrative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of Mangrove Resources to Develop Sustainable Shrimp Mariculture in the Gulf of Fonseca, Honduras," USGS Open File Report 03-177, p. 69.

폰세카만 등 6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국경선의 확정에 대해 1972년 합의 하였다. 6개 구간에 대해서는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한다는 조항을 1980년 평화협정에 포함하였다.

199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¹³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

13 "Case Concerning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 / 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Judgment of 11 September 1992, <https://www.icj-cij.org/public/files/case-related/75/075->

과의 3국은 폰세카만 일부 지역을 공유하게 되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회의적 견해도 제기되지만,¹⁴ 폰세카만 콘도미니엄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폰세카만 영해 분쟁은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지만, 종전 합의서나 평화협정에 국경획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전을 폰세카만 콘도미니엄의 설정 배경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또 폰세카만 콘도미니엄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설정되었다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당사국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가 간 합의에 의한 공유 해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카리브해 공동관리지역

1993년 자메이카와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구역(EEZ)이 서로 겹침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긋지 않고 대신에 공동관리지역(Joint Regime Area)이라는 명칭의 공유 영해를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¹⁵ 주변의 도서 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입하던 와중에 양국이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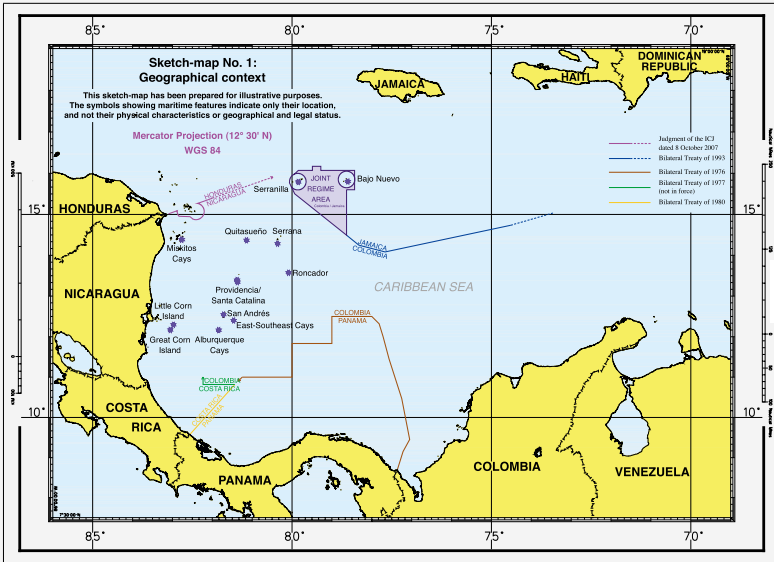
4) 콘스탄스호

콘스탄스호(Lake Constance; 독일어 Bodensee)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에 걸쳐있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운터호(Untersee)에서 독일과의 국경을 선으로 확정하고 있는 스위스는 콘스탄스호 중간을 지나는 선이 국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콘스탄스 호숫가 길이가 3국 가운데 가장

19920911-JUD-01-00-EN.pdf; 판결 요약문은 다음을 참조, <https://www.icj-cij.org/public/files/case-related/75/6673.pdf>.

14 Christopher Rossi, 2015, "Jura Novit Curia? Condominium in the Gulf of Fonseca and the 'Local Illusion' of a Pluri-State Bay,"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 No. 3, pp. 793~840.

15 Maritime Delimitation Treaty between Jamaica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12 November 1993,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REATIES/JAM-COL1993MD.PDF>.



〈그림 8〉 카리브해 공동관리지역

출처: Territorial Court of Justice, 201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Judgment of 19 November 2012, p. 639.

짧아 호수 내에 국경선을 획정할 경우에 가장 작은 호수 면적을 영유하게 되는 오스트리아는 콘스탄스호가 경계선 없는 공유 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콘스탄스호는 국경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공유 호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문 대신에 묵시적 합의에 의해 콘도미니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4. 공유 영토·해양의 등장과 소멸

콘도미니엄 사례는 현존하는 건수보다 이미 소멸한 건수가 더 많다. 〈표 1〉에서 정리하고 있는 과거 존재했던 콘도미니엄은 제국주의 식민지 확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다. 뉴헤브리디스, 칸톤·엔더버리섬, 앵글로-이집트



〈그림 9〉 콘스탄스호

출처: 위키미디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d/Gliederung_des_Bodensees.png/1200px-Gliederung_des_Bodensees.png

수단 등이 그런 사례이다. 식민지 유형의 콘도미니엄은 그 자체가 정부의 대상이라 정부와 피정부이라는 경합적 관계였고, 또 정부자 간에 배제적 관계의 과도적(過渡的) 타협으로 성립되었다가 힘에 변화가 발생하여 일방이 배제되면서 소멸하였다.

오늘날의 보편적 콘도미니엄은 접경지역 유형이다. 핑섬이나 폰세카만 등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그리고 중립 모레스네체처럼 장기간 존속하다가 소멸한 콘도미니엄 모두 접경지역에 설정된 것이다.

IV. 나가는 말

유럽이 하나의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동아시아는 하나의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유럽 국가에서 다른 유럽 국가로 가려면 대부분 제3국을 거쳐야 하고, 따라서 유럽의 허브(hub)는 대륙 내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보다 해양에 접

〈표 1〉 폐기된 콘도미니엄

공유국	공유 영토 · 영해	존속 기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비스만(Walvis Bay)	1992~1994
영국 프랑스	뉴헤브리디스(New Hebrides)	1906~1980
미국 영국	칸톤 · 엔더버리섬(Canton and Enderbury Islands)	1939~1979
아랍에미리트 오만	하프(Hadf)	1960~?
유럽 열강	탕헤르국제지대(Tangier International Zone)	1924~1956
영국 이집트	앵글로-이집트 수단(Anglo-Egyptian Sudan)	1898~1955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자유지구(Free Territory of Trieste)	1947~1954
독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독립국(Independent State of Croatia)	1941~1943
뉴질랜드 영국 호주	나우루(Nauru)	1923~1942
네덜란드(1830년부터는 벨기에) 프로이센	중립 모레스네(Neutral Moresnet)	1816~1919
독일 불가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북도브루자(Northern Dobruja)	1914~1919
영국 프랑스	토고랜드(Togoland)	1914~1916
독일 미국 영국	사모아 제도(Samoan Islands)	1889~1899
영국 프랑스	이집트	1876~1882
볼리비아 칠레	태평양 호혜지대(Mutual Benefits Zone)	1866~1874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슐레스비히 · 홀스타인 · 라우엔부르크(Schleswig, Holstein and Lauenburg)	1864~1866
스페인 포르투갈	코투 미스투(Couto Misto)	10세기~1864
미국 영국	오리건 컨트리(Oregon Country)	1818~1846
네덜란드 프로이센	네덜란드-프로이센 접경수로(Dutch-Prussian Frontier Stream)	1816~?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크라쿠프 자유도시(Free City of Cracow)	1815~1846
리투아니아 폴란드	쿠를란트공국(Duchy of Courland)	1726~1795
러시아 폴란드-리투아니아	자포르자 시크(Zaporozhian Sich)	1667~1775
네덜란드 영국	합스부르크네덜란드(Spanish Netherlands)	1706~1714

한 국가가 훨씬 많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로 인해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국가인 셈이다. 동아시아에서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갈 때 대부분 경우가 해양을 통해 바로 갈 수 있는, 즉 해양이 허브이자 스포크(spoke)이다.¹⁶ 동아시아 변형은 동아시아 해양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해양적 속성은 육지보다 대체로 덜 경합적이고 덜 배제적이다. 잠재적 협력 가능성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의 유동적 속성에 의한 분쟁 소지도 있다. 다수 국가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그리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양이 매우 넓다. 현재 동아시아 해양은 남북한 간, 한일 간, 한중 간, 중일 간, 중국과 대만 간,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각종 분쟁거리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영토 분쟁의 주요 토양은 민족주의이다. 특히 강대국이 배타적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동아시아 해양 질서가 위협해진다.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 대신에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중국의 개방적 정책이 동아시아 변형에 필요하다. 오늘날 분쟁 목록에서 사라진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 문제는 독일의 진취적 행보로 해결될 수 있었다. 독일은 국제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의 근거를 댈 수 있는 타국 영토가 있었지만, 동서독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당시 국경을 유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¹⁷ 물론 독일은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영토 분쟁 지역이 누구의 영토이든 자국 이해가 적절하게 충족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했을 것이다.

근대국가 체제는 재산권이라는 개인 간의 규범을 국가 단위로 발전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산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산주의가 제시되었지만 현실 세계의 유력한 공산주의는 일당독재라는 정반대의 극단적 독

16 김재한, 2005, 『동북아공동체』, 집문당, 133~137쪽.

17 김재한, 2012, 「통일독일 국경의 탈근대적 안정화」, 『영토해양연구』, Vol. 3, 192~213쪽.

과점 양식으로 존재할 뿐이다. 근대국가 체제가 존속하는 한, 영유권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근대 이래의 공유 영토는 제국주의의 일시적인 공동 식민지 통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공유 영토는 당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립되었을 뿐이지, 글로벌 또는 로컬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다.

제국주의와 전쟁이라는 과거사는 오늘날 영토 분쟁의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특정 영토를 공유하자는 주장은 주로 그 영토의 점유에서 배제된 국가가 차선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관한 과거사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지 않은 채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영토·영해가 공유 본래의 취지대로 공유되려면 과거사 및 미래사에 대한 인식 공유가 선행적으로 또는 적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공유 자체가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유되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처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분쟁 예방에 공유보다 더 필요한 속성은 비경합성이다. 접경지역은 국가들 이익의 첨예한 충돌 장소가 아니라, 국가들 이익의 양립 가능성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한다. 진정한 공유성은 국가 중심의 관계보다 글로벌 또는 로컬 중심의 관계에서 나온다. 공유성을 높이려면 정치·군사는 적대적 관계를 극복해야 하고, 경제는 채취가 아닌 상생의 길로 운영되어야 하며, 문화는 민족 중심이 아닌 공존번영의 가치관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국문초록

영토 공유는 공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배제적인 방식이다. 영토 공유는 공유 자원을 남용하려는 공유국의 동기를 억제할 수 없으면 공유지의 비극처럼 갈등을 잉태하기도 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경합성이 공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경합적 속성의 영토·해양은 오래 공유될 수가 없다. 공유를 지속하려면 비경합적이어야 한다. 비경합적으로 운영될 가치재가 없는 한, 영토 공유는 최종 해결책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해양이 허브이자 스포크이다. 해양적 속성은 육지보다 덜 경합적이고 덜 배제적이다.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해양적 속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협력 잠재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난개발 방식이나 무력 충돌의 방식보다 지속가능한 번영의 방식으로, 또 국가 단위보다 글로벌 또는 로컬 단위로 추진되어야 분쟁이 해소되고 또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영토 공유를 역사, 국제법, 경제학 등 융복합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공유 영토, 콘도미니엄, 공유재, 공공재, 경합성, 배제성, 영토 분쟁

ABSTRACT

Territorial Sharing from Views of Law and Economics

Kim, Chae Han
(Professor, Hallym University)

Territorial sharing emphasizes commonality, but in reality it is a very excludable method in that it excludes third countries. As shown 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territorial sharing may be a source of another conflict if the motives of abusing shared resources cannot be suppressed. In other words, it is not easy to share territories and seas of rival goods for a long time because rivalry interferes with non-excludability. For sharing to persist, it must be nonrival. Territorial sharing cannot be the final solution unless it works as nonrival goods. In East Asia, seas are both a hub and a spoke. Maritime attributes are less rival and less excludable than land. East Asia has greater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that it has stronger maritime properties than do other regions. Cooperation can be institutionalized only when it is promoted at the global or local level instead of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suggests new policy implications for territorial sharing from multidisciplinary views such as history,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Keywords

condominium, common-pool resources, public goods, excludable goods, rival goods, territorial disputes

참고문헌

- 김재한, 2005, 『동북아공동체』, 집문당.
- _____, 2009, 「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사례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제3호.
- _____, 2012, 「통일독일 국경의 탈근대적 안정화」, 『영토해양연구』, Vol. 3.
- 장윤정 · 이호진 · 김재한, 2014, 「장소특정적 미술과 독도의 문화예술적 영토」, 『영토해양연구』, Vol. 7.
- Bueno de Mesquita, Bruce, Alastair Smith, Randolph Siverson, and James Morrow, 2003,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MIT Press.
- Charney, Jonathan, and Lewis Alexander, eds., 2004,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ume III,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92, "Case Concerning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 / 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Judgment of 11 September 1992.
- _____, 201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Judgment of 19 November 2012.
- Jacobs, Frank, 2012, "The World's Most Exclusive Condominium," *New York Times*, January 23.
- Kim, Chae-Han and Bruce Bueno de Mesquita, 2015, "Ecological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Pea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 Morrow, James, "Territorial Change and Selection Institution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1, No. 1.
- Perkins, Taylor Calvin, 2014, "Edification from the Andorran Model: A Brief Exploration into the Condominium Solu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to Current Land Dispute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21, No. 2.
- Rivera-Monroy, V. H., R. R. Twilley, and E. Castañeda, 2002, "Hurricane Mitch: Integrative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of Mangrove Resources to Develop Sustainable Shrimp Mariculture in the Gulf of Fonseca, Honduras," USGS Open File Report 03-177.

- Rossi, Christopher, 2015, "Jura Novit Curia? Condominium in the Gulf of Fonseca and the 'Local Illusion' of a Pluri-State Bay,"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 No. 3.
- _____, 2017, "A Case Ill Suited for Judgment: Constructing 'A Sovereign Access to the Sea' in the Atacama Desert,"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Vol. 48, No. 2.
- _____, 2018, "The Gulf of Fonseca and International Law: Condominium or Imperial Anticolonialism?," *Jus Gentium: Journal of International Legal History*, Vol. 3, No. 1.
- Samuels, Joel, 2008, "Condominium Arrangements in International Practice: Reviving an Abandoned Concept of Boundary Dispute Resolutio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No. 4.

